

자금세탁방지 정책

(2022. 04. 13.)

광주은행

1. 위험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선별하기 위한 실사제도

- 고객확인제도
 - 계좌 신규, 일회성 금융거래,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 실시
 -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,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
- 위험평가
 -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위험(국가위험, 고객유형,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)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
- 실제소유자 확인
 -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정의 됨

2. 위험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선별하기 위한 비대면 실사제도

- 비대면 고객확인제도 (법인의 경우 비대면 고객확인 불가능)
 - 계좌 신규 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포함한 고객확인 실시
 - 비대면 거래의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

3.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실사제도

- 은행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, 당행과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 - '테러자금금지법'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
 -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
 - FATF에서 발표하는 고위험국가 및 이행 취약국가의 국적자(개인,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) 또는 거주자
 - 은행이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
 -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

4. 정치적으로 주요한 인물

- "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"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에서 정치적·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,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뜻함
-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어

야 함

-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거래의 수용 여부
-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(또는 실제소유자)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 그 고객과 거래의 계속 유지 여부

5. 고위 관리의 자금세탁/테러자금 조달 등의 위험이 있는 상품 및 국가들에 대한 승인

- 신상품 위험도 평가 승인
 -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관련 부서가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는 자금세탁 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'신상품 위험평가표'에 의거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위험 국가들에 대한 승인
 - FATF에서 발표하는 고위험국가 및 이행 취약국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의 경우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이 필요함

6. 자금세탁/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문서 보관 및 보관년수 기재

- 은행은 '특정금융정보법' 제5조의4에 따라 고객확인기록, 금융거래기록,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서를 포함한 내·외부 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을 금융거래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